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82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윤종오
용혜인 · 손 술 · 한창민
이용우 · 박해철 · 정을호
최혁진 · 김준형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금전 차입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의 특례를 두는 등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여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의 자산 수탈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사모펀드의 차입에 대한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인수기업의 기업인수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

록 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에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49조의7제1항).

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그 취득한 지분증권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5항).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는 기업인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15년이”를 “5년 이상 그 지분증권을 소유하여야 하고, 15년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출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비율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받은 투자목적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한 회사는 제3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금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4조제19호의5를 제19호의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5. 제249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행위를 한 자

제449조제1항에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의4. 제2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조에서-----

-----5년 이상 그

지분증권을 소유하여야 하고, 1

5년이-----

--.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1. · 2. (생략)

⑥ (생략)

<신설>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출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비율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받은 투자목적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한 회사는 제3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금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

제444조(벌칙) -----

벌금에 처한다. 1. ~ 19의4. (생략) <u><신설></u> <u>19의5.</u> (생략) 20. ~ 29.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1의3. (생략) <u><신설></u> 42. ~ 49. (생략) ② ~ ④ (생략)	-----. 1. ~ 19의4. (현행과 같음) <u>19의5. 제249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행위를 한 자</u> <u>19의6.</u> (현행 제19호의5와 같음) 20. ~ 29.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1. ~ 41의3. (현행과 같음) <u>41의4. 제2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u> 42.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